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 내용 안내

전기사업법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포번호 : 제8194호

공포일자 : 2007. 1. 3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태풍, 폭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재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한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유 명확화

(안 제12조제1항)

- ①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음.
- ②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양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한 경우와 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등을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의 구체적 사유로 정함.
- ③ 전기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소지가 줄어들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특별안전점검의 실시(안 제66조의3제1항 신설)

- ①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음.

- ②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등의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그 전기설비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③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거용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안 제66조의3제3항 신설)

- ①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의 전기 수용가(需用家)에서 전기 사용 중 불편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인 조치가 필요함.
- ② 주거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
- ③ 전기설비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하여 전기사용상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73조의8 신설)

- 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헐값으로 그 업무를 수주(受注)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기안전관리업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②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이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③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부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인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신청·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③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 ④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3호 및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생략)</p> <p>③산업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p>	<p>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p> <p>-----</p> <p>-----</p> <p>-----제4호의 어느 하나-----</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p> <p>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p> <p>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p> <p>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p> <p>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9.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11.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p> <p>13.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p> <p>②(현행과 같음)</p> <p>③ -----</p> <p>-----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수 있다.</p> <p>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제15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⑤ (생략)</p> <p>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⑤ (생략)</p> <p>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④ (생략)</p> <p>⑤ 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p>	<p>-----.</p> <p>④ ----- 제1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p> <p>-----.</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5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p> <p>-----.</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p> <p>-----.</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ACT INFORMATION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후 이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 ⑩ (생 략)</p> <p>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p> <p>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 · 등록신청 · 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p> <p>1.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p> <p>2. ~ 4. (생 략)</p> <p>5. 「초 · 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p> <p>6.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신 설〉</p> <p>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p> <p>① · ② (생 략)</p>	<p>-----.</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p> <p>① -----</p> <p>-----</p> <p>-----</p> <p>-----인가신청 · 신고(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 · 변경등록신청 · 변경인가신청 · 변경신고를 포함한다)-----「건축법」에 따른-----</p> <p>-----.</p> <p>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유아교육법」에 따른-----</p> <p>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p> <p>1. 태풍 · 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p> <p>2. 장마철 · 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p> <p>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p> <p>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p> <p>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p> <p>1. ~ 3. (생 략)</p> <p>④ ~ ⑥ (생 략)</p> <p>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신 설></p> <p>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 (생 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73조의6(등록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p> <p>3. · 4. (생 략)</p> <p><신 설></p>	<p>③-----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한다)----- ----- 1. ~ 3.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①----- ----- ----- ----- ----- -----신고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p> <p>2. -----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경우</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 · 조사) ① (생략)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 하여금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p> <p>제9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99조(별직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전기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1의3. (생략) <u>〈신설〉</u></p> <p>2. 3. (생략) ② ~ ⑥ (생략)</p>	<p><u>에 대한 실태조사 등</u>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3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 ·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 ----- 1. 2. (현행과 같음)</p> <p>제98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99조(별직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 ----- 제9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 -----</p> <p>제108조(과태료) ①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p>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01

154kV 전기설비를 15명이 함께 전기안전관리업무(팀장→부서장→과장→대리(안전관리자)→보조원2명의 9명)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선임은 본인(전기안전관리자)과 보조원2명임

질문1 _ 전기사고중 설비사고(수전설비부터 콘센트까지)는 모두 선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화재발생시, 일상적인 책임이 아닌 법적 벌칙)

질문2 _ 감전사고등 인명사고 발생시 모두 선임자가 책임져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도 공동책임인지)

질문3 _ 종업원 전기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기안전교육시 같이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

?!

??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에게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의하여 고용된 관계로 고용주나 종업원의 도움없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동법 제73조의3 규정에서는 고용주 및 종업원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만약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입니다.

- 질문 1), 2)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별 또는 해당 설비별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내부 안전관리규

정 또는 안전관리조직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평상시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 및 발생유형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책임소재 및 범위가 정해지므로 과실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사고 발생시 책임여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 질문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은 산업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교육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 목적은 서로 다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안전교육시 별도의 전기안전관리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교육으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18)

02 전기수용설비 1,200kW인 건물에 전기기사가 실제 상주근무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할 경우(일정기간당 일정액의 대여료를 받음), 자격증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 !

❓ 귀 사업장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의별표12 규정에 의하여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 장소의 사업장에 상주근무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에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벌칙에는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3.12.18)